

## 기업윤리 브리프스 *Business Ethics Briefs*

### 1.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국정부의 역할

- 영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부처가 CSR 지원활동을 수행
  - 영국 통상산업부(*Department of Trade & Industry*)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제개발부(*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*), 환경식품농촌부(*Department of Environment, Food & Rural Affairs*), 사회보장부(*Department of Work & Pensions*), 외무부(*Foreign & Commonwealth Office*)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
    - 통상산업부는 CSR 실천관행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, CSR 사례연구, CSR 인식 제고를 통한 기업성과 개선, 중소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
    - 국제개발부는 지속가능발전(*sustainable development*) 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석유, 천연가스, 채광 등 추출산업(*extractive industries*)의 투명성 제고, 윤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, 사회적 책임 투자 등을 지원
    - 환경식품농촌부, 사회보장부, 외무부 등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, 노동, 기아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
  - 이 밖에 문화체육부, 교육부, 교통부, 내무부, 재무부, 환경청 등도 직간접적으로 관여

□ 영국 정부가 CSR에 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

- CSR이란 “지속가능발전”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양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및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글로벌화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도록 공헌하는 것이 기업의 지향 방향
- 따라서 정부는 CSR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(*minimum legal standards*)을 정하여 기업을 독려하고 자극함으로써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
- 또한 CSR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SR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CSR 기법개발, 우수사례 소개, 포상, 투명성 장려 등과 같은 전략을 적극 지원할 필요
  - 특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통상산업부의 경우 CSR이 비용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자산 내지 차별화된 능력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워크숍 개최, 교육 훈련 등을 지원
  - 국제개발부의 경우에도 CSR 실행 차원에서 영국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, 비정부기구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지원을 통하여 빈곤퇴치, 생산성 향상, 기업 구조조정, 해외투자 등을 유도

□ 한편 영국 정부가 CSR을 독려하기 위해 규정한 법적 기능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인식

-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화, 개방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한층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됨에 따라 자율과 의무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
- 사회적·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정당한 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정책체계를 설정할 책임

-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(*tick-box approach*)를 지양하고 대다수 기업이 창의력과 혁신을 활용하여 CSR을 실천하고 완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적 기준 설정
- 이는 본질적으로 CSR을 기업 자체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행위라는 점을 존중한 데서 비롯
- 현재 정부는 CSR 독려를 위해 기업의 경영정책 및 실적 등 경영정보 공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·운영
-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, 국제노동기구(ILO)의 근로기준 조약 등 국제기구의 CSR 관련 협약서 서명을 통해 동 협약 준수를 천명

### 영국의 CSR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

#### ◎ 연금법 (2000 Amendment to the Pension Act)

- 2000년 7월 영국정부는 연금법에 기업연금의 경우 투자결정시 사회적·환경적·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정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

#### ◎ 회사법 (The 2002 White Paper on Company Law)

- 2002년 “회사법 재검토에 대한 권고내용“을 기초로 영국정부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영국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적·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◎ OECD 협약 (The OECD Convention on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)

- OECD의 뇌물방지 협약에 따라 영국 국민 또는 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새로운 법을 제정

\* 자료 : 영국 국제개발부, DFID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

## 2. 국가청렴위원회 활동과 청렴도 평가체제 - (i)

\*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(김성호)의 한국기업윤리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(2005. 11. 4) 기조발표내용 요약

□ 2002.1.25일 국가 차원의 계획적·종합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부패방지법」에 의거, “부패방지위원회” 설립

○ 「부패방지법」 개정에 따라 2005.7.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“국가청렴위원회” (청렴위)로 명칭 변경

□ 청렴위는 「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실현」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함과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해 “6대 역할 및 활동방향”(PEOPLE)－*Policy-maker, Evaluator, Observer, Partner, Legal-reformer, Ethics-leader*－을 수립·추진

### ① 국가 청렴정책의 수립·조정자 (*Policy-maker*)

— 청렴위는 중장기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연도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매년초 각 공공기관에 「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」 시달

— 「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」 및 「반부패현안대책실무회의」 등을 개최하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반부패 대책의 연계성 및 실효성 제고

—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제 확립을 유도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「부패방지 대책 추진·점검회의」를 통해 기관별 반부패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

### ② 각급기관 부패방지 활동의 평가자 (*Evaluator*)

— 청렴위의 평가체제는 부패방지사책 평가, 인식도 조사, 청렴도 평가로 구분

—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각 기관들의 반부패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적정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반부패 분야의 종합적 평가

· 2004년의 시책평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피드백 과정으로서 「2003년 청렴도 측정」 결과가 낮은 업무를 「청렴도 중점 개선과제」로 선정하여 평가

·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부평가 의존방식을 탈피하고 청렴 위 추진정책 등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내부평가 방식을 활용

—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는 우리나라 부패현황 및 부패방지 정책추진 상황 등에 관한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

· 대상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, 공무원, 외국인, 민간 기업인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

· 조사결과는 중장기 부패방지 정책방향 설정 및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

—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·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

### ③ 부패 감시 및 신고 보호자 (Observer)

— 청렴위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·처리하며, 공직사회의 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공익신고자 보호

—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

— 이와 관련하여 금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대폭 강화\*

- \* · 신고자 보호대상에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신고한 자를 포함하였으며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
-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고자에서 보복행위자로 전환하였고, 「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」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고자의 신분보장 강화
- 신고자 보상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, 지급기준을 이익금의 2~10%에서 4~20%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
-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가능

#### ④ 민간 및 국제 반부패활동의 협력자 (Partner)

- 청렴위는 금년 3월 체결된 「투명사회 협약」의 이행 및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협약 총괄기관으로서 동 부문 이행상황도 점검·평가
- 반부패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여 국제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
  - 금년 9월중 APEC 사상 최초로 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한 본격적 국제회의인 「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」을 개최한 데 이어 「반부패 투명성 T/F회의」도 개최

#### ⑤ 부패취약 분야의 법제도 개혁자 (Legal-reformer)

- 청렴위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“부패 없는 사회건설”을 위하여 사회의 전 분야에 산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·추진
- 이를 위해 2004. 6월 이후 각급 기관의 법·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450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\*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

\* 금년 9월 현재 293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7개 과제는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

— 이와 함께 부패통제 효과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대 분야\*, 24개 공통과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중

\* 부패유발법규의 정비, 행정의 투명성 제고, 적발·처벌의 실효성 제고, 국민참여 확대, 반부패 환경 조성

#### ⑥ 청렴한 사회윤리 확립의 선도자 (Ethics-leader)

— 청렴위는 부패방지 교육교재 개발, 강사진 구성 운영,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부패방지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직자, 학생 등 대상별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기본틀과 추진과제 마련

— 또한 부패방지 의식개혁 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별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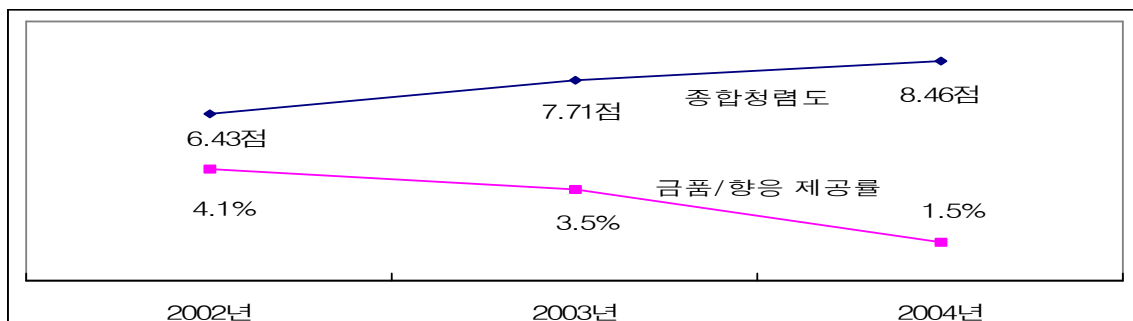
□ 청렴위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부패방지활동 결과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크게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

○ 국제투명성기구(TI)의 부패인식지수 매년 높아지면서 청렴순위도 상승 (2003년 4.3점<50위> → 2004년 4.5점<47위> → 2005년 5.0점<40위>)

○ 국제경영개발원(IMD)의 뇌물·부패지수가 2004년 52위에서 2005년 33위로, 전체 국가경쟁력은 2004년 35위에서 2005년 29위로 상승

○ 청렴위의 종합청렴도도 2002년 6.43점 → 2003년 7.71점 → 2004년 8.46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

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·향응 제공률 변동추이



### 3. 기업윤리팀 소식

□ 2005년 10월 28일 국가청렴위원회 6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기업윤리자문위원회 개최

- 위원장, 사무처장, 기업윤리자문위원(8명)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공기업 윤리경영 모델」 설명을 위해 (주)에코프론티어 직원 4명이 배석
- 자문위원들은 현재 청렴위가 (주)에코프론티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「한국형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」 개발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

#### 《 모델개발 추진경위 》

- 청렴위는 금년 7월 한국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모형을 제시·보급하기 위해 「공기업 윤리경영 모델」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8.23일 “(주)에코프론티어”와 사업계약 체결
- 9.28일 청렴위 홍보협력국장 주재하에 모델개발에 대한 제1차 중간보고서 발표회 실시
- 10.28일 「기업윤리자문위원회」를 개최하여 모델개발에 대한 제2차 중간 발표회 실시
- 앞으로 (주)에코프론티어는 자문위원과 공기업 실무자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12월 중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

#### 《 모델개발 관련 주요 논의내용 》

- 윤리경영 모델은 공기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될 필요



-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은 OECD 가입국가로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 경영환경에 맞는 모델개발 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
- 윤리경영 모델은 국내외 윤리경영 우수기업 사례를 참작하되, 윤리경영의 핵심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투명경영·개방경영 전략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발
- 현재 개발중인 「공기업 윤리경영 모델」은 윤리경영 도입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
- 윤리경영 모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 초기단계부터 CEO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이며,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윤리경영 자체가 경영전략이나 경영철학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

### 기업윤리자문위원회



- 2005년 11월 10일 대한주택공사, 한국조폐공사 등 18개 공기업 처·실장과 청렴위 관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「공기업 윤리경영 협의회」 개최
  - 윤리경영협의회에서는 조폐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이 자사의 윤리경영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발표자료에 관한 질의응답·토론 등이 활발히 전개
  - 또한 「공기업 윤리경영 모델」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(field survey) 차원에서 협의회 참석 공기업 실무자들에게 모델개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

### 공기업 윤리경영협의회

